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: 2017. 12. 18

개정 : 2018. 03. 09

담당 : 대학평의원회(02-950-5424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24조2내지 제24조의 6,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(이하 “개방임원”이라 한다)를 추천한다.

제3조(구성 및 절차)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 2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- ②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라 법인과 대학평의원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4조(운영 및 임기)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,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.

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)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-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개방임원의 추천) ① 법인의 이사장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(재직 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)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, 추천감사의 경우 단수로 법인에 추천한다.

제7조(개방임원의 자격) ① 개방임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받은 자(단, 이단종파 제외)로 민·형사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설치·경영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.

1. 법령,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
2. 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. 다만, 개방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.
3. 현재 재직 중인 법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

제8조(회의소집) ① 법인 또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18.03.09)

제9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·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) 추천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 시행령, 법인 정관 및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